

기계 · 메카트로닉스분야 마이스터고

2025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

2024. 7



'인성과 직무역량을 갖춘 창의적인 기술인재 육성'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Gyeongbuk Machinery Technical High School



2025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기계·메카트로닉스 분야 마이스터고)

1 모집계열 및 모집정원(남)

| 계열 | | 기계·메카트로닉스 계열 | |
|----------|-----|--|------|
| 학급수 | | 13학급 | |
| 정원 | | 234명 | |
| 모집 정원 | 정원내 | 일반전형(90%) | 210명 |
| | | 특별전형(10%) | 24명 |
| 비고 | | <p>■ 1학년 2학기 학과 선발 기준에 의거 학과로 편성 정밀기계과 5학급(기계설계제작(2), 정밀기계(2), 재료가공(1)) 자동화설비과 4학급(자동화시스템(2), 자동화설비보전(2)) 전기전자제어과 4학급(전기제어(2), 전자제어(2))</p> <p>※ 전공 학급수와 및 전공명은 변경될 수 있음.</p> | |

※ 특별전형에서 모집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전형에서 충원함

2 전형 일정

| 구분 | 일정 | 비고 |
|-----------------------|--|---|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24. 10. 14.(월) ~ 10. 17.(목) 17:00까지 | ○ 인터넷 접수(학교 홈페이지 팝업 게시) 후 제출 서류를 인편 또는 우편으로 본교 원서 접수처로 제출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 시간 이내에 도착할 것 |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10. 23.(수) 10:00 | ○ 원서접수사이트 또는 지원 학교별로 통보 ○ 전형별 1.5배수 선발 |
| 2차 전형 (심층면접, 신체검사) | 2024. 10. 25.(금) 11:00 | ○ 전형 장소: 본교 입학전형실 - 직업기초능력평가, 신체검사 및 구술면접 |
| 합격자 발표 (입학허가예정자) | 2024. 10. 30.(수) 10:00이후 | ○ 원서접수사이트 또는 지원 학교별로 통보 |

3 지원 자격

1. 일반전형

기계·메카트로닉스분야에 소질과 적성이 있고 졸업 후 취업할 의지가 명확한 자로서

가. 중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나.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 인정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각종학교 졸업예정자 포함)

2. 특별전형

□ 일반전형 지원 자격을 갖춘 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가. 가업승계자 전형

| 대 상 | |
|-----|--|
| ■ |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사업자등록) 경영자로 사업경영 기간합산 3년 이상이며 현재 운영 중인 중소기업 경영자의 자녀 |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예시):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 (단,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식품품 제조업 관련 등 기업체는 불가함.)

나. 사회통합 전형

| 전형 구분 | 대 상 |
|--|--|
| 기 회 균 등 전 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구 우선돌봄차상위) - 교육급여수급자 ■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 인 정 대 상 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차상위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청에서 정한 교육비지원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학교장이 추천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중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
| 사 회 다 양 성 전 형 (소득분위 8분위 이하) ※ 가구원 수에 따른 월 소득기준액에 대한 건강보험료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 ■ 북한이탈주민 또는 자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다문화가정 자녀(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 아동복지시설수용자(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 ■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 자녀 ■ 순직 공무원의 자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 가족 구성원 ■ 농어촌 지역(행정구역상 읍면지역) 소재 중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로서 중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 10년이상 재직중인 중령이하 군인자녀 ■ 경찰(경사 이하)·소방(소방장 이하)·교정(교위 이하) 공무원 자녀 ■ 산업재해근로자 자녀 ■ 환경미화원 자녀 ■ 우편집배원 자녀 ■ 무형문화재보유자 자녀 ■ 입양자녀·입양가족 자녀 ■ 한부모가정 자녀(기타), 다자녀가정(생존 자녀 3인 이상) 자녀 |

※ 특별전형에서 모집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전형에서 충원함

※ 사회다양성 전형: 소득분위 8분위 이하에 준하는 가정의 자녀만 지원 가능, 소득분위 8분위 이하에 대한 증명은 가구원 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적용(<덧붙임 1> 참조)

3. 특례입학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 해당자

1.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 나.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다.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4. 제97조제1항제3호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 제1호 및 제4호 해당자: 정원 내에서 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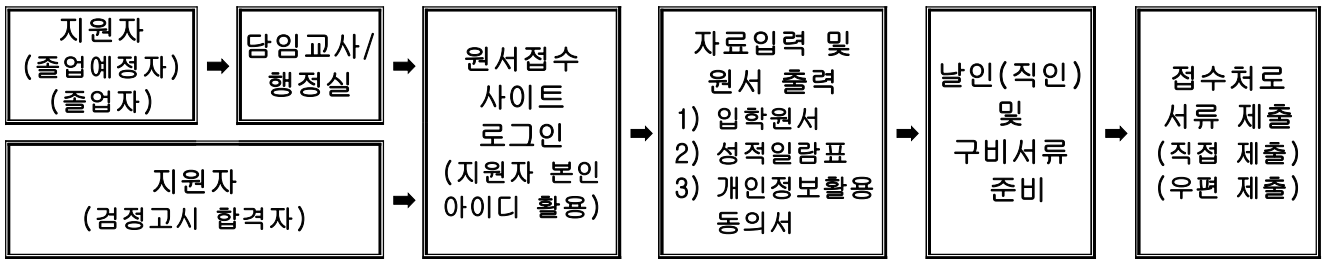
제2호 및 제3호 해당자: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 선발

4.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는 기회균등 전형으로 선발하며, 기회균등 전형에서 탈락할 경우에는 교육지원대상자에 한하여 전체 모집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

4 지원 방법 및 원서 작성 요령

1. 단일계열 모집이므로 별도의 지망 및 학과(전공) 선택 없음
2. 본교 원서접수사이트를 통해 지원자의 인적사항과 성적을 입력
 -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는 해당 지역 보훈(지)청에서 보훈 번호를 확인한 후 보훈 번호를 입력
3.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입학원서」와 「개인별 성적 일람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출력하여 지원자, 보호자, 담임 및 학교장 직인을 날인하여 **2024. 10. 17.(목) 17:00까지**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본교 신입생 원서접수처로 제출
(우편으로 입학원서와 구비서류 제출 시 접수 마감 시간 이내에 도착하여야 함,
4. 기재사항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모두 지원자에게 있음
5. 지원 절차



※ 원서접수사이트 : 학교 홈페이지(<https://gbgigong.dge.hs.kr/>) 팝업 게시
 ※ 접수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275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신입생 원서접수처
 ※ 서류 제출은 접수 마감일(2024. 10. 17.(목) 17:00)까지 도착분만 유효함

5 전형 방법

1. 1차 전형(서류전형)

가. 모집인원: 전형별 **1.5배수** 인원 우선 선발

| 구 분 | 모집인원(명) | 1.5배수 인원(명) | | | 비고 |
|--------------|---------|-------------|------|-----|----|
| | | 특별전형 | 일반전형 | 합계 | |
| 기계·메카트로닉스 계열 | 234 | 36 | 315 | 351 | |

- 나. 1차 전형은 교과성적 및 출결 반영
- 다. 모집 요강에서 제시하는 성적산출 방식 적용
- 라. 특별전형 합격자를 먼저 선발 후 탈락자는 일반전형 지원자로 전환하여 일반전형 합격자를 선발함.
(일반전형 지원자로 전환되는 경우 일반전형 성적산출 방법 적용)
- 마. 지원자가 모집정원의 1.5배수 미만이면 지원자 전원 1차 전형 합격
- 바. 1차 선발 최하위 성적에서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1차 전형 합격
- 사. 1차 전형 합격자는 원서접수사이트 게시 및 각 중학교로 통보하며, 응시자 개별통보는 없음

2. 2차 전형(심층 면접, 신체검사)

- 가. 응시 자격 : 1차 전형(서류전형) 합격자
- 나. 2차 전형에 응시하지 않는 경우 2차 전형 점수는 0점으로 처리
- 다.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에 의거 2차 전형 실시
- 라. 신체검사는 점수로 환산하지 않음.

※ 단, 입학 후 취업 등의 진로 결정에 따른 신체검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3. 최종 합격자의 선발

- 대구광역시 모집군 이외의 대상자가 전체 모집 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 합격자의 선발은 다음의 순서를 따른다.

가. 특별전형

- 1) 모집요강의 성적산출 방식에 따라 특별전형 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
- 2) 위 방법으로도 미충원된 인원은 일반전형 모집정원에 포함하여 선발
- 3) 특별전형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자는 일반전형 지원자로 전환

나. 일반전형

- 1) 일반전형 지원자와 특별전형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함
(특별전형 지원자의 성적은 일반전형 지원자 성적 비율로 산출)
- 2) 모집요강의 성적산출 방식에 따라 일반전형 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

- 대구광역시 모집군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가.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포함)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나. 중학교 졸업자 또는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 인정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각종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포함)에 거주하는 자

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로 지정받아 제68조제1항에 따른 지역별·학교군별 추첨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중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포함)에 거주하는 자

위 나, 다항의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라 함은, '원서접수일 현재 전 가족(보호자 포함)이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를 뜻한다.

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의 자녀로서 대구광역시 소재 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자

대구혁신도시 이전 기관(12개 기관):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중앙교육연수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장학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중앙119구조본부

4. 동점자 처리는 교과성적, 심층 면접, 출결, 봉사활동, 가산점 순서로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함

6 성적산출

1. 전형별 성적 점수 및 반영 비율

| 구 분 | 1차전형 | | 2차전형 | | | | 총점(비율) | |
|------|--------------|--------------|-------------|-------------|-------------|-------------|--------------|----------------|
| | 교과성적 | 출 결 | 봉사활동 | 가산점 | | 심층면접 | | |
| | | | | 모범상 | 리더십 | | | |
| 일반전형 | 졸업예정자 졸업생 | 100 (40%) | 45 (18%) | 9 (3.6%) | 3 (1.2%) | 3 (1.2%) | 90 (36%) | 250점 (100%) |
| | 검정고시 | 145 (58%) | . | . | . | . | 105 (42%) | |
| 특별전형 | 졸업예정자 졸업생 | 75 (30%) | 45 (18%) | 9 (3.6%) | 3 (1.2%) | 3 (1.2%) | 115 (46%) | 250점 (100%) |
| | 검정고시 | 120 (48%) | . | . | . | . | 130 (52%) | |

- 가. 교과성적을 제외한 출결, 봉사활동, **가산점의 적용 기준일은 2024.9.30.**(단, 졸업생은 졸업일 기준)까지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된 내용**으로 하며, 점수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단, 가산점의 상장 및 임명장은 학교생활기록부 미등재 시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원본대조필'이 되어 있어야 함)
- 나. 검정고시 합격자는 과목별 취득한 점수를 성취도 환산점으로 산출하여 과목별로 반영

2. 교과성적

- 가. 교과성적 반영 비율 :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40%의 비율로 반영
- 나. 졸업예정자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모든 교과성적 반영(체육·음악·미술 포함)**
졸업생은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의 모든 교과성적 반영
(단, 성취도에 'P'로 기록된 교과는 교과성적에 반영하지 않음)
- 다. 전 교과 성취도를 환산(A=5, B=4, C=3, D=2, E=1)하여, 환산점의 총합을 과목 수로 나누어 반영
(단, 체육·음악·미술교과 등 성취도가 3등급(A, B, C) 평가로 나오는 경우, A(우수)는 5점, B(보통)는 4점, C(미흡)는 3점을 적용)
- 라. 자유학기제 등으로 교과 성적이 없는 학기가 있는 경우, 성적 없는 학기의 교과성적은 동일 학년 성적이 있는 학기의 성적을 100% 반영
- 예시) 1학년 1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 1학년 2학기 성적을 100% 반영

마. 교과성적 산출 방법

1) 일반전형

| 구분 | 산출 공식 | 점수 |
|-------|--|------|
| 졸업예정자 | $\left(2 \times \frac{A_{11}}{N_{11}} + 2 \times \frac{A_{12}}{N_{12}} + 4 \times \frac{A_{21}}{N_{21}} + 4 \times \frac{A_{22}}{N_{22}} + 8 \times \frac{A_{31}}{N_{31}} \right)$ | 100점 |
| 졸업생 | $\left(2 \times \frac{A_{11}}{N_{11}} + 2 \times \frac{A_{12}}{N_{12}} + 4 \times \frac{A_{21}}{N_{21}} + 4 \times \frac{A_{22}}{N_{22}} + 4 \times \frac{A_{31}}{N_{31}} + 4 \times \frac{A_{32}}{N_{32}} \right)$ | |
| 검정고시 | $20 \times \left[\left(\frac{A}{N} \right) \right]$ | |

2) 특별전형

| 구분 | 산출 공식 | 점수 |
|-------|--|-----|
| 졸업예정자 | $0.75 \times \left(2 \times \frac{A_{11}}{N_{11}} + 2 \times \frac{A_{12}}{N_{12}} + 4 \times \frac{A_{21}}{N_{21}} + 4 \times \frac{A_{22}}{N_{22}} + 8 \times \frac{A_{31}}{N_{31}} \right)$ | 75점 |
| 졸업생 | $0.75 \times \left(2 \times \frac{A_{11}}{N_{11}} + 2 \times \frac{A_{12}}{N_{12}} + 4 \times \frac{A_{21}}{N_{21}} + 4 \times \frac{A_{22}}{N_{22}} + 4 \times \frac{A_{31}}{N_{31}} + 4 \times \frac{A_{32}}{N_{32}} \right)$ | |
| 검정고시 | $15 \times \left[\left(\frac{A}{N} \right) \right]$ | |

3) 산출 공식의 적용

가) 졸업예정자

(1) A_{ij} : (i 학년 j 학기에 이수한 개인의 과목별 성취도 환산점의 총합, A=5, B=4, C=3, D=2, E=1)

(2) N_{ij} : (i 학년 j 학기에 이수한 과목 수)

나) 졸업생

(1) A_{ij} : (i 학년 j 학기에 이수한 개인의 과목별 성취도 환산점의 총합, A=5, B=4, C=3, D=2, E=1)
(수, 우, 미, 양, 가로 표현되는 졸업생, 수=5, 우=4, 미=3, 양=2, 가=1)

(2) N_{ij} : (i 학년 j 학기에 이수한 과목 수)

다) 검정고시

(1) A : (취득한 개인의 과목별 성취도 환산점의 총합)

| 검정고시 과목별 점수 | 100 점 이하 95 점 이상 | 95 점 미만 90 점 이상 | 90 점 미만 85 점 이상 | 85 점 미만 80 점 이상 | 80 점 미만 |
|----------------|---------------------|--------------------|--------------------|--------------------|---------|
| 환산점 | 5 점 | 4 점 | 3 점 | 2 점 | 1 점 |

(2) N : (이수한 과목 수)

바. 1개 학년의 성적이 없는 경우는 아래 표와 같이 성적을 산출한다.

| 구분 | 산출 공식 | 점수 | |
|-------|-------------------|--|------|
| 졸업예정자 | 1학년의 성적이 없는 경우 | $\left(4 \times \frac{A_{21}}{N_{21}} + 4 \times \frac{A_{22}}{N_{22}} + 8 \times \frac{A_{31}}{N_{31}} \right) \times \frac{100}{80}$ | 100점 |
| | 2학년의 성적이 없는 경우 | $\left(2 \times \frac{A_{11}}{N_{11}} + 2 \times \frac{A_{12}}{N_{12}} + 8 \times \frac{A_{31}}{N_{31}} \right) \times \frac{100}{60}$ | |
| 졸업생 | 1학년의 성적이 없는 경우 | $\left(4 \times \frac{A_{21}}{N_{21}} + 4 \times \frac{A_{22}}{N_{22}} + 4 \times \frac{A_{31}}{N_{31}} + 4 \times \frac{A_{32}}{N_{32}} \right) \times \frac{100}{80}$ | |
| | 2학년의 성적이 없는 경우 | $\left(2 \times \frac{A_{11}}{N_{11}} + 2 \times \frac{A_{12}}{N_{12}} + 4 \times \frac{A_{31}}{N_{31}} + 4 \times \frac{A_{32}}{N_{32}} \right) \times \frac{100}{60}$ | |

3. 출결

가. 중학교 졸업(예정)자의 성적 반영 : 적용 기준일 (2024. 9. 30. 졸업생은 졸업일 기준)

나. 출결 성적산출

1) [45 - {미인정 결석일 수 × 3 + (미인정지각/결과/조퇴 횟수) × 2}] 점

2) 출결 성적의 최저점은 0점

다. 미인정 결석일 수 및 미인정지각/결과/조퇴 횟수의 계산은 다음과 같음

1) 3개 학년 미인정 결석 횟수를 합산하여 산출

2) 3개 학년 미인정지각, 미인정 결과, 미인정 조퇴의 횟수를 합산하여 산출

라. 질병 및 기타(학교장이 인정한 결석, 지각, 조퇴, 결과)로 인한 횟수는 포함하지 않음
 마. 기타 출결상황 처리기준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77호)』 및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준한다.

4. 봉사활동

- 가. 중학교 졸업(예정)자의 성적 반영 : 적용 기준일 (2024. 9. 30. 졸업생은 졸업일 기준)
- 나.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된 봉사활동만을 인정함(단, 기재된 내용에 형광펜으로 표시해야함)
- 다. 봉사활동 성적산출

- 1) 학년도 별 봉사 기준 시수표에 근거하여 평점 부여
- 2) 2025년 2월 중학교 졸업예정자의 봉사활동 성적

[2025년 2월 졸업예정자(현재 3학년) 기준 봉사성적 산출 기준]

| 2022학년도 | | 2023학년도 | | 2024학년도 | |
|---------|----|---------|----|---------|----|
| 기준 시수 | 평점 | 기준 시수 | 평점 | 기준 시수 | 평점 |
| 5시간 이상 | 3점 | 10시간 이상 | 3점 | 10시간 이상 | 3점 |
| 5시간 미만 | 2점 | 10시간 미만 | 2점 | 10시간 미만 | 2점 |
| 3시간 이상 | | 7시간 이상 | | 7시간 이상 | |
| 3시간 미만 | 1점 | 7시간 미만 | 1점 | 7시간 미만 | 1점 |

라. 졸업자

- 1) 2024년 2월 중학교 졸업자의 봉사활동 성적

[2024년 2월 졸업자 기준 봉사성적 산출 기준]

| 2021학년도 | | 2022학년도 | | 2023학년도 | |
|---------|----|---------|----|---------|----|
| 기준 시수 | 평점 | 기준 시수 | 평점 | 기준 시수 | 평점 |
| 5시간 이상 | 3점 | 5시간 이상 | 3점 | 10시간 이상 | 3점 |
| 5시간 미만 | 2점 | 5시간 미만 | 2점 | 10시간 미만 | 2점 |
| 3시간 이상 | | 3시간 이상 | | 7시간 이상 | |
| 3시간 미만 | 1점 | 3시간 미만 | 1점 | 7시간 미만 | 1점 |

- 2) 2020학년도 점수 : 이수 시간과 관계없이 만점(3점) 부여
- 3) 2020학년도 이전 점수 : 학년별 20시간 이상(3점), 20시간 미만~15시간 이상(2점), 15시간 미만(1점)

5. 가산점

- 가. 중학교 졸업(예정)자의 성적 반영 : 적용 기준일 (2024. 9. 30., 졸업생은 졸업일 기준)
- 나.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된 리더십부분 및 수상내역만을 인정함(단, 기재된 내용에 형광펜으로 표시해야함)
- 다. 리더십 가산점

- 1) 전교 학생회장, 전교 학생부회장, 학급 반장에 한함(학급 부반장 미포함)
- 2) 리더십 가산점 성적산출

| 구분 | 1학년 | 1학년 | 2학년 | 2학년 | 3학년 | 3학년 |
|-------|-----|-----|-----|-----|-----|-----|
| | 1학기 | 2학기 | 1학기 | 2학기 | 1학기 | 2학기 |
| 졸업예정자 | 0.5 | 0.5 | 0.5 | 0.5 | 1.0 | |
| 졸업자 | 0.5 | 0.5 | 0.5 | 0.5 | 0.5 | 0.5 |

- 3) 동일 학기에 2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0.5점(졸업예정자는 3학년 1학기 1.0점)만 인정
- 4) 임원의 활동 기간이 해당 학기 전체일 경우에만 인정(중도 포기 및 변경 시 미인정)

라. 모범상 가산점

- 1) 효행상, 선행상 등의 모범학생 표창을 받은 자(모범, 선행, 효행, 공로, 봉사)
 예시) 표창장(모범), 표창장(선행), 표창장(효행), 표창장(공로), 표창장(봉사)

- 2) 행동덕목별 최우수 모범생: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한 모범생으로 상을 받은 자
- 3) 건당 1점을 부여하되, 총 3점을 초과할 수 없음
- 4) 모범상 수상 경력은 한 학기당 한 건씩만 인정

6. 심층 면접

- 가. 소질, 적성, 인성, 진학 동기, 향후 진로 계획 등 “성장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를 반영하여 미래 마이스터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평가
- 나. 평가 영역별 내용 및 방법

| 평가 영역 |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반영비율 |
|-------------|-----------------------------------|-------|------|
| 직업기초능력(적성) | 언어영역, 수리영역, 공간영역, 집중영역 | 선택형 | 70% |
| 인성 및 성장 가능성 | 태도, 진학 동기, 학업계획(진로비전), 마이스터고 이해 등 | 구술면접 | 30% |

- 다. 각 전형별 평가 방법은 동일하며 받은 총점에서 전형별 총점으로 점수를 환산함
- 라. 구술면접은 면접영역의 요소별 체크리스트에 의한 다면평가로 실시함

7 신체검사

- 1. 신체검사는 점수로 환산하지 않으나, **[신체검사 이상증상]**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의 소견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입학 후 취업 등의 진로결정에 따른 신체검사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2. 전문의 소견서와 지원자 및 보호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최종 합격 여부 결정
- 3. 전문의 소견서 제출
 - 가. 제출기한: 2024. 10. 28.(월), 16:00까지
 - 나. 제출대상자
 - 1) **[신체검사 이상증상]**에 해당하는 자
 - 2) 2차 전형 시 신체검사에서 다음과 같은 이상증상이 발견된 자

[신체검사 이상증상]

- 가. 좌우 교정시력이 모두 0.3 미만
- 나. 보청기를 사용하여도 보통 말소리를 듣지 못하여 학교생활 및 실습에 지장이 있음
- 다. 상·하지의 기능 장애로 실습 등에 지장이 있음
- 라. 학업 수행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뇌전증과 정신 질환이 있음
- 마. 사물의 원래 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증상, 색각 이상(색맹이나 색약 등의 증상도 포함)으로 학교생활 및 실습 등에 큰 지장이 있음

- 다. 제출방법: **[신체검사 이상증상]**에 대한 전문의 소견서를 이메일(gbgigong_gyomoo@naver.com)로 제출
- 라. 제출 후 반드시 본교에 전화 연락(☎053-231-8312~4, 8322)하여 제출여부 확인해야 함.

8 기타 사항

1. 전형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름
2. 본교 지원자는 전국 소재 마이스터고에 **이중 지원**(지원 시 불합격 처리)할 수 없으며 본교 합격자(등록 포기자 포함)는 2025학년도 전·후기 고등학교에 재응시할 수 없음(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 8항)
3. 본교에 지원하여 불합격이 확정된 자는 직업계열 특성화고 및 후기 고등학교에 응시할 수 있음
4. 입학전형의 성적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5. 입학이 허가된 경우라도 증명서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 대한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6. 제출된 서류는 입학전형 업무 및 합격 후 증빙자료로 활용되므로 반환하지 않음

9 제출 서류

| 구분 | 제출 서류 | |
|----------|---|---|
| 공통 사항 | 1. 입학원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한 입학원서) 1부 - 3개월 이내 증명사진 스캔 후 원서접수사이트에 입력 - 양면 또는 단면, 흑백 인쇄 가능 - 출력된 입학원서의 증명사진에 학교장 직인 날인 2. 개인별 성적 일람표 1부(원서접수사이트에서 성적 입력 후 출력) 3.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입학원서 양면 출력 시 뒷면에 출력됨) 4. 학교생활기록부 II 사본 1부(원본대조필) - 교과학습발달상황(7번)은 원점수, 과목 평균(표준편차)을 제외하고 성취도(수강자 수)만 출력 - 단, 모범상 가산점에 해당하는 경우는 출력 시 ‘덧붙임8’ 참고 5.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는 해당 학교의 ‘원본대조필’ 을 받아서 제출 | |
| | 졸업자 | 주민등록등본 |
| 해당자 | 검정고시 합격자 | 주민등록등본 고등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합격증 전 과목 성적증명서 사본 |
| | 가업승계자 |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납세 증명서, 가업승계 서약서(덧붙임 7) |
| |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기회균등전형)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학부모 확인서(덧붙임 3) 대상자별 증빙서류(덧붙임 2) |
| |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사회다양성전형)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학부모 확인서(덧붙임 3) 지역건강보험료, 직장건강보험료, 혼합(지역+직장) 대상자별 증빙서류(덧붙임 2) |
| | 특례전형 대상자 | 대상자별 증빙서류(덧붙임 4) |
| |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의 자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 | 기타 지원 자격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 | |

| | | | |
|-------------|-----------------|---|-----------------|
| 입학관련 문의처 | 학 교 홈페이지 : | https://gbgigong.dge.hs.kr/ | |
| | 입 학 관 련 문 의 : | 053) 231 - 8322, 8312, 8313 | 팩스 : 637 - 8196 |
| | 생 활 관 (기 숙 사) : | 053) 231 - 8340, 8341 | |
| | 주 소 : | [42748]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275(상인동) | |

□ 소득 8분위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

※ 「2024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60%」

(단위: 원)

| 가구원수 | 소득기준(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566,000 | 127,174 | 68,822 | 128,160 |
| 2인 | 5,893,000 | 211,316 | 162,847 | 214,007 |
| 3인 | 7,544,000 | 271,291 | 233,543 | 277,236 |
| 4인 | 9,168,000 | 336,105 | 303,332 | 348,552 |
| 5인 | 10,714,000 | 397,093 | 373,366 | 422,318 |
| 6인 | 12,190,000 | 453,848 | 433,430 | 498,289 |
| 7인 | 13,624,000 | 498,289 | 478,514 | 543,979 |
| 8인 | 15,059,000 | 543,979 | 524,772 | 589,232 |
| 9인 | 16,494,000 | 589,232 | 567,285 | 659,065 |
| 10인 | 17,928,000 | 659,065 | 625,932 | 773,009 |

※ 가구원 수 산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학생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 및 2촌 이내의 형제자매**
 - 단,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또는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 수에 포함하고,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외)조부조모 등 기타 부양의무자를 가구원 수에 포함**
 - (예1) 조모, 부, 모, 신청 학생, 동생이 있을 경우 ⇒ 가구원수는 4명(조모 제외)
 - (예2) 외조모, 신청 학생, 동생인 경우 ⇒ 가구원수는 3명(부모가 없으므로 외조모 포함)

※ 건강보험료 산정 및 적용

- (산정) 건강보험증에 **부양자로 등록된 부모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단,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는 제외)
 - 부모 중 한 쪽이 피부양자인 경우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는 합산하지 않음
- (적용) 부모가 각자의 건강보험에 별도의 부양자로서 가입된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
 - 부모가 모두 지역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지역 기준 적용
 - 부모가 모두 직장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직장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과 직장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혼합 기준 적용
 -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외)조부조모 등 기타 부양의무자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적용
 - **부모가 모두 피부양자로 조회된 경우**로서 부모가 해당 학생의 (외)조부, (외)조모, 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건강보험 부양자인 (외)조부, (외)조모, 형제·자매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적용

2025학년도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증빙 서류

| | | 대상자 | 제출 서류 | 발급처 | |
|-----------------------|--------------------------------|--------------------------------------|---|--------------------|------------|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 ①사회통합전형 공통 |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
| | | | 학부모 확인서 | <덧붙임 3> | |
| | ② 기회 균등 전형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수급자 증명서 | 구청, 주민자치센터 | |
| | | 법정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대상자 |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 구청, 주민자치센터 |
| |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의료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확인서 | 구청, 주민자치센터 |
| | | |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 구청, 주민자치센터 |
| | | |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 | 구청, 주민자치센터 |
| | |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구 우선돌봄차상위) | 차상위계층 확인서 | 구청, 주민자치센터 |
| | | | 교육급여수급자 |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 | 구청, 주민자치센터 |
| | | 차차상위계층 | | 교육비지원확인서 | 해당 학교 |
| |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 관할 보훈지청 | |
| |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또는 복지급여 수급 확인서) | 구청, 주민자치센터 | |
| | 학교장이 추천한 경제적 곤란자 | 학교장 추천서, 관련 증빙서류 | <덧붙임 6> | | |
| | ③사회 다양성전형 공통 | 지역건강보험료 | 건강보험증 사본(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 (최근 3 ~ 6개월 평균 납부액) |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 |
| | | 직장건강보험료, 혼합(지역+직장) | 건강보험증 사본(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 (최근 3 ~ 6개월 평균 납부액) | | |
| | ④ 사회 다양성 전형 |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선정결과 통지서 | 관할 교육(지원)청 | |
| | | 북한이탈주민 또는 자녀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결정통지서 또는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시청, 통일부 | |
| | | 다문화가정 자녀 | 혼인관계증명서(부모), 외국인등록증명서(부모)(해당자), 귀화증명서(해당자) | | |
| | | 아동복지시설수용자 | 아동복지시설 재원 증명서 | | |
| | | 소년소녀가장 | 추가 서류 없음 | | |
| | | 조손가정 자녀 | 추가 서류 없음 | | |
| | | 순직 공무원의 자녀 | 순직 확인서 | | |
| | | 장애인 가정 가족 구성원 | 장애인 등록증(또는 증명서) | | |
| | | 농어촌 지역(행정구역상 읍면지역)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 졸업증명서(졸업자에 한함) | | |
| | | 군인, 경찰, 소방, 교정 공무원의 자녀 | 재직증명서 | | |
| | | 산업재해근로자 자녀 | 관련 사실(보상) 확인서 | | |
| | | 환경미화원, 우편집배원 자녀 | 재직증명서 | | |
| | | 무형문화재 보유자 자녀 | 무형문화재 인증서 | | |
| 입양 가정 가족 구성원 | | 입양사실확인서 | | | |
| 한부모가정 자녀(기타) | | 추가 서류 없음 | | | |
| 다자녀가정(생존 자녀 3인 이상) 자녀 | 추가 서류 없음 | | | | |

- ※ 제출 서류는 제출일 기준 7일 이내 발급한 서류이어야 함(별도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서류는 제외)
- ※ 학교에서는 대상자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 사회다양성 전형의 각 유형별 제출 서류 서식은 해당 고등학교에서 '입학전형요강' 에 구체적으로 제시
- ※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및 보호자 증빙이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서류로 갈음함
- ※ 제출서류

- 기회균등전형: ①사회통합전형 공통, ②기회균등전형 해당 제출서류
- 사회다양성 전형: ①사회통합전형 공통, ③사회 다양성전형 공통, ④사회다양성전형 해당 제출서류

2025학년도 사회통합전형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 부 모 확인서

| | | | | | |
|---|----------|--|-------|------|--|
| 성명 | 학생 | | 생년월일 | 학생 | |
| | 부 | | | 부 | |
| | 모 | | | 모 | |
| 주소 | | | | | |
| 학생 출신학교 | | () 중학교 ()년 2월 (졸업/졸업예정) | | | |
| 지원 유형 | 기회균등전형 | 유형() | | | |
| | 사회다양성 전형 | 유형(), 소득분위 ()분위 ※ 덧붙임1의 기준표 참고하여 작성 | | | |
| <p>본인은 사회통합전형 지원 자격에 적합하게 지원하였음을 서약하며, 지원 자격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원 자격이 없음에도 증명서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p> | | | | | |
| <p>2024년 월 일</p> | | | | | |
| | | 확인자 | 학 생 : | (서명) | |
| | | | 학부모 : | (서명) | |
| <p>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장 귀하</p> | | | | | |

※ 사회다양성 전형 지원자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적용한 소득분위를 반드시 기재

덧붙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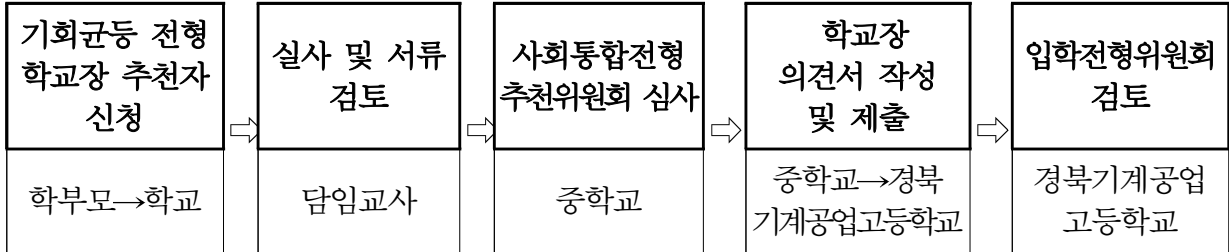
해외 귀국학생 및 외국인학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제출 서류

| 해당자 구분 구비서류 | 외국에서 9년이상 (초중과정) 이수한 학생 (제1호) |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제2호가목) |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 자녀 (제2호나목) | 외국인 학생 (제2호다목) | | 북한 이탈 주민 (제3,4호) | 비 고 |
|---------------------------------------|---|-----------------------------------|-------------------------------|------------------------|-----------------|---------------------------|--------------------------------------|
| | | | | 부모 모두 외국인인 학생 | 기타 외국인 학생 | | |
| 외국학교 수 학년 성적(재학)증명서 | ○ | ○ | ○ | ○ | ○ | | 재학학년(기간) 명시 |
| 유학 전, 국내 최종학교 제적(졸업, 정원외 관리)증명서 | | (○) | (○) | | | | 최종 재학년월일 (최종 재학학년) 명시 |
| 출입국사실증명서 | ○ (학생) | ○ (부,모,학생) | ○ (부,모,학생) | ○ (학생) | ○ (학생) | | 출입국 관리사무소, 동사무소 발급 |
| 가족관계증명서 | | | | ○ | ○ | | 순수외국인은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 정부 증명서 |
|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 | ○ | ○ | ○ | | | ○ | 재외동포 자녀는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
| 국내거주사실증명서 영주권(시민권)사본 | | (○) | | | | | 재외동포 자녀에 한함 |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 ○ (부,모,학생) | | | | | 재외공관 발행 |
| 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 | | ○ | | | | 주무부처 발급 |
| 제3국 수학인정서 | | (○) | | | | | 부모 체류국 해외 공관 발급 |
|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 | | ○ (부,모,학생) | ○ (학생) | | 출입국 관리사무소, 동사무소 발급 |
| 새터민 등록확인서 | (○) | | | | | ○ | 해당 행정구청 발급 |
| 학력확인서 | (○) | | | | | ○ | 해당 행정구청 발급 |
|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 (○) | | | | | ○ | 해당 행정구청 발급 |
| 학력인정증명서 | (○) | | | | | ○ | 해당 교육청 발급 |

※ (○)는 해당자에 한함

※ 영문 및 한글 이외 언어로 발급받은 서류는 영문 또는 한글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

- ▶ (추천 절차) ① 학생(학부모)이 담임교사에게 지원 의사 표시 → ② **사회통합전형 추천위원회***에서 학생이 제출한 증빙서류 검토 확인 → ③ 해당 고교에 추천



* 사회통합전형 추천위원회: 학생복지심사위원회, 학생추천위원회 등 기존 위원회 활용

- ▶ (추천 방법) 저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가정환경 실태조사(면담) 등을 통해 학생의 가정형편에 대한 구체적·객관적인 사실 관계 등을 추천서(중학교 자율 서식)에 상세히 기재

▶ 증명서류(예시)

| 구 분 | 서류 | 구 분 | 서류 |
|-------|-------------------|--------------------|------------------------|
| 실직 | 실직급여 수급증 사본 | 부동산 채권 압류 | 경매진행통지서 또는 결정문 사본 |
| 신용불량자 | 금융기관 확인서 | 의료비 지출 과다 |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
| 급여 압류 | 소속기관의 급여소득 공제 확인서 | 가정 해체 등으로 인한 생계 곤란 | 가출신고확인서 또는 사회복지사 의견서 등 |

※ 증명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증명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추천서에 미제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추천 대상자 선정(예시)

-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런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실업급여 수혜가정 등)
-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폐업·휴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거나 1주택 거주자로 주택이 경매 중이라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학교장 추천서
대장번호

학 교 장 추 천 서

| | | | |
|--|---|------|--|
| 성 명 | | 생년월일 | |
| 소 속 | () 중학교 3학년 ()반 번호() | | |
| | ()년 2월 (졸업예정 / 졸업) | | |
| 추천분야 | 3. 지원자격 - 2. 특별전형 - 기회균등 전형_인정대상자(가정형편) | | |
| 추천사유 | | | |
| 2024 년 10 월 일 추천자 : () 중학교장 (직인) | | | |
|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장 귀하 | | | |

※ ‘덧붙임5’ 의 경제적 곤란 학생의 학교장 추천 절차 참고

※ 중학교에서는 생계가 지극히 곤란하여 기회균등전형 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장이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여 학교장 추천서를 본교에 제출해야 함

※ 학교장 추천서 대장번호 : 본 추천에 대한 중학교에서 자체 보유한 학교장 추천 대장 번호를 입력

가업승계서약서

수험번호 :

출신 중 :

성명 :

상기명 본인은 기계·금속·전기·전자·메카트로닉스 계열 중소기업 경영자의 자녀로서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마이스터고)에 가업승계에 정자 특별전형에 합격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입학 후 가업 또는 가업과 유사한 계열의 직종에 취업하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2. 가업을 승계받기 위해 졸업 후 가업 또는 가업과 유사한 계열의 직종에 취업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일

지원자 성명: (서명)

학부모 성명: (서명)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장 귀하

덧붙임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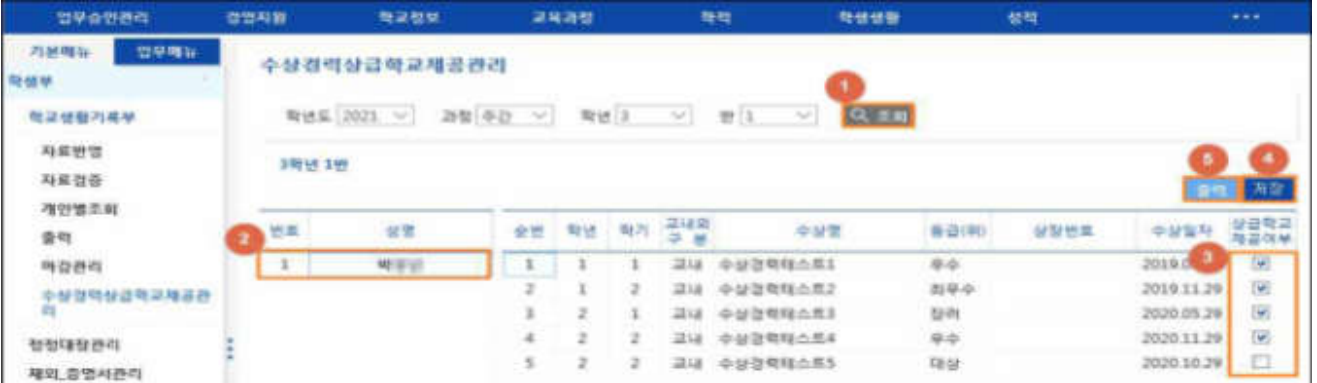
모범상 가산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인쇄 방법

가산점이 있어 꼭 수상경력 출력이 필요한 학생은 다음의 방법을 참고하셔서 학교생활기록부II를 인쇄해야 수상경력이 함께 출력됩니다.

1단계

수상경력 상급학교 제공관리 체크!

[학생부]-[학교생활기록부]-[수상경력상급학교제공관리]에서 ‘학년도(2024)’, ‘과정(주간)’, ‘학년(3)’, ‘반(1)’ 확인 → 조회 → 해당학생(박○○) 선택 → 상급학교제공관리여부를 체크하고 저장



2단계

학교생활기록부 II 상급학교 제출용 출력

[학생부]-[학교생활기록부]-[출력]의 학생별 조회 탭에서 ‘학년도(2024)’, ‘과정(주간)’, ‘학년(1)’, ‘반(1)’ 확인 → 조회 → 해당학생(김○○) 선택 → 출력구분(일반출력), ‘학생부 선택(학생부II)’ 선택 → 출력

